200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

공 통 사 항

| 지 | 원 | 기 | 준 |

□ **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(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)**
- 금융 ·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

□ **지원제한**
-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을 초과하는 기업(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)

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업력 3년 미만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,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,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10%이상이고 5천만원이상인 기업
-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(협동화사업은 예외)
-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
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(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은 제외)
- 정책자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

| 지 | 원 | 한 | 도 |

□ **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(또는 매출액의 125%)**

※ 구조개선사업(시설),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(시설),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, 중소 · 벤처창업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

| 지 | 원 | 방 | 식 |
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 · 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**
- 특별경영안정사업, 개발및특허기술사업, 수출금융 지원사업 등

※ 중소 · 벤처창업자금,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(기술평가센터)에서 직접 신청 · 접수 가능

※ 중소 · 벤처창업자금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 · 접수 가능
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 · 접수하여 자금지원 결정 후 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, 보증서부, 순수 신용대출**
- 구조개선사업, 협동화사업 등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간 |

□ **2005. 1. 10~자금 소진시까지**

※ 구조개선자금은 상 · 하반기 구분 접수

※ **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〈1. 공통사항〉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 · 추천**

사 업 별 자 금 지 원 내 용

1 구 조 개 선 자 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**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**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1조 7500억원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**구조개선사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**
- 지원제외업종 : 사치향락, 건설, 소매업등 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
- 다만, 제조업 전업율 30%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업체 중 지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
-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을 혁신형기업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 지원(혁신형기업은 우대)
-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지원

□ **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: 지식기반서비스업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. 다만, 운전자금 지원시 전업율 30% 이상 (S/W업종은 예외)**

□ **특별경영안정사업**
-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
  -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%이상 피해기업
  - 거래금융기관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발생기업
  - 사업성 · 기술성은 있으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기업
  - 최종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 · 신용보증기관등의 신용불량기업, 화의 · 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, 자본잠식기업 중 구조조정전문회사(조합), 창업투자회사(조합)가 투자한 기업 등
  -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%이상 제조기업

| 지 | 원 | 범 | 위 |

가. 구조개선사업

□ **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**

□ **기업간 인수 · 합병 추진 등 구조조정자금**

□ **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**

□ **시험평가비,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, 시장진입비용 등**

나.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

□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확보자금 및 시설자금

□ 원부자재 구입비용, 연구개발비,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

□ 재해, 원부자재 수급애로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| 지 | 원 | 조 | 건 |

가.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

□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4.9%,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.4%이내

□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운전자금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
□ 대출한도

- 구조개선사업 :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: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□ 지원방법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 · 접수 · 지원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을 통한 담보부(부동산, 신용보증서등) 및 순수신용대출

나. 특별경영안정사업

□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7.9%, 원부자재구입자금은 5.9%(중소기업진흥 공단 신용대출 6.4%),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정함

□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
□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(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)

□ 지원방법

-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2 중소 · 벤처창업 자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·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3500억원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창업을 준비 중인 자

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 ·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
※ 지원제한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및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, 도박장운영업, 미용 ·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)

| 지 | 원 | 범 | 위 |

□ 생산 · 연구시설, 응용 S/W, 중고시설, 사업장확보자금, 경락자금, 건축공사비(토지구입비 제외)등

□ 연구개발비용,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

| 지 | 원 | 조 | 건 |

□ 대출금리 (변동금리) : 연 4.9%,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.4%

□ 대출기간

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□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□ 지원방법

-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: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 · 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(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- 신용보증부 대출 : 신용보증기관이 신청 · 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(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담보부, 순수신용)

□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(기술평가 보증서부)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(소액 보증서부)

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5100억원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
□ 도 ·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※ 지원제외 대상 : 금융 · 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
| 지 | 원 | 범 | 위 |

□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| 지 | 원 | 조 | 건 |

□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
□ 대출한도 : 5천만원

□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
□ 상환방식

-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

□ 대출취급은행

- 국민 · 기업 · 신한 · 우리 · 외환 · 조흥 · 한국씨티(한미) · 하나 · 부산 · 대구 · 광주 · 전북 · 경남 · 제주은행, 농협

□ 지원방법

-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여 대출취급은행에 추천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,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(www.sbdc.or.kr)

4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·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800억원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

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

-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, 중소기업청 선정 Inno-Biz 업체 보유기술
  ※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(완료)기업과 Inno-Biz 선정업체는 우대
-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기술
  ※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
- 국내 · 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

| 지 | 원 | 범 | 위 |

□ **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설비 등**
□ **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**

| 지 | 원 | 조 | 건 |

□ **대출금리(변동금리) :** 연 4.9%
(신용등급에 따라 0.5% 할인 또는 할증금리 적용)
□ **대출기간 :**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□ **대출한도 :** 업체당 연간 5억원(운전자금은 3억원)
□ **지원방법**
-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의 신청 · 접수후 평가를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대출 및 중진공 직접 순수신용 대출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,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**

5 수출금융 지원자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**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**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**700억원**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수출계약 중소기업
※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

| 지 | 원 | 범 | 위 |

□ **신용장기준 포괄금융**
-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(수출계약액의 90% 이내)

□ **실적기준 포괄금융 :**
-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/2 이내로 5억원 한도
  ※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

| 지 | 원 | 조 | 건 |

□ **지원금리**
- 5.1%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)

□ **지원기간 :** 180일 이내
- 실적기준 포괄금융 :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만기일 일시상환
-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: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

□ **지원방식**
-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
  ※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 진행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**

6 협동화 자금

| 사 | 업 | 목 | 적 |

□ **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, 공해방지시설,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**

| 지 | 원 | 규 | 모 |

□ **2400억원**

| 지 | 원 | 대 | 상 |

□ **아래 지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**
※ 지원제한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및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, 도박장운영업, 미용 ·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)

※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우대

| 지 | 원 | 유 | 형 |

□ **집단화 :**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
□ **공동화 :** 생산시설, 연구개발시설,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, 제품전시판매장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
□ **협업화 :**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, 제품개발, 원자재구매, 품질관리,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

| 지 | 원 | 한 | 도 |

□ **시설자금 :** 추진주체 50억원이내, 참가업체 40억원 이내
※ 공동화사업 추진주체의 경우 150억원 이내
□ **운전자금 :** 추진주체 1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
□ **협업화자금 :** 추진주체30억원이내,참가업체20억원 이내

| 지 | 원 | 조 | 건 |

□ **대출금리(변동금리) :** 연 4.9%,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.4%
□ **대출기간**
- 시설자금 : 10년(거치기간 5년 포함)
-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| 신 | 청 | 접 | 수 | 기 | 관 |
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**

2005. 1. 10 중소기업청 · 중소기업진흥공단

인터넷 이용 안내

□ **중소기업청** www.smba.go.kr
□ **중소기업진흥공단** www.sbc.or.kr
□ **기술신용보증기금** www.kibo.co.kr
□ **정책자금안내시스템** www.finanfo.go.kr
□ **소상공인지원센터** www.sbd.or.kr